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4697    |
| 의 퇴 인 | 이강일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4.11.29 |
| 추계번호  | 24B4030    |

#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,851억원, 2030년 5,251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2조 5,247억원(연평균 5,049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합계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안 제19조의5 신설<br>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<br>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여<br>부 확인 등, A) | 4,851 | 4,948 | 5,047 | 5,148 | 5,251 | 25,247 | 5,049 |
| 국비(A×5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465 | 3,535 | 3,605 | 3,677 | 3,751 | 18,034 | 3,607 |
| 지방비(A×2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386 | 1,414 | 1,442 | 1,471 | 1,500 | 7,213  | 1,443 |

주: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보험 지원비용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종사자별 보험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이 확정될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19조의5 신설<br>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<br>종사자등의 보험<br>가입 여부 확인 등) |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(제4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2  | 안 제19조의6 신설<br>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) |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(제3항) | 재량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<br>여부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9조의5 신설<br>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<br>등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) | ○        | • (추계)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19조의6<br>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<br>교육 등)                 | ×        | • (미첨부3호) 시·도지사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시·도별 연수기관 설립 및 운영, 지정 계획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가입하는 보험 가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실행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 - 다만, 현재 정부의 지원 범위가 불확정적이어서 유사한 공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단가를 참고하여 재정지원액을 추산함
-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<sup>1)</sup>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<sup>2)</sup>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가입자 수에 지원비용을 곱하여 추산
  - (추계대상)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장에 등록된 종사자는 2023년 기준 55만명으로 추정되며, 동 수준이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<sup>3)</sup>
    - 개정안에 따라 인증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 55만명이 모두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함
  - (보험료 단가) 보험 가입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121만원으로 가정함
    - 보험료 단가는 연령별, 근로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, 가입자별 보험료를 추산하기 곤란하므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만 40세 1년 무사고인 종사자를 기준으로 추산한 값을 평균치로 가정하여 적용함
    - 보험료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(%)

|      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 | 2.1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

2) 안 제19조의5(유상운송보험의 의무 가입 등)

-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(이하 “보험등”이라 한다)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-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3)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장에 등록된 종사자는 2023년 조사 기준 55만명으로 집계되며, 인증되지 않은 사업장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, 본 추계에서는 인증사업장에 등록된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

[표 2] 보험료 비교 예시

| 구분       | 보험사 평균 <sup>1)</sup> | 공제 상품 <sup>2)</sup>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보험료 (연간) | 약 220만원              | 121만원               |

주 1) 보험사 평균 : 이륜차 보험 온라인(다이렉트) 보험료('24.09.23.) 기준

2) 공제상품 : 월 단위 상품으로 가입후 1년간 무사고 가정 연간 예상 보험료임

자료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024.9.30.)

- (재정부담비율) 개정안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비용 지원 비율은 불확정적이므로, 유사사례의 보험가입비용 지원 사업의 평균부담율을 감안하여 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 30%로 가정함

[표 3] 재해 및 안전 관련 주요 보험 지원사업 현황

| 사업명<br>(소관부처)       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간보험료(원)                | 2024예산(백만원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풍수해보험<br>(행정안전부)           | 주택, 온실, 상가공장(소상공인) 등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| 보험료<br>56.5~70%(국비)<br>13.5%(지방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48~72,082              | 38,045      |
| 농업인안전보험<br>(농림축산식품부)       |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                     | 50%(일반농)~70%<br>(영세농)(국비)<br>지방비 13%                         | 101,000~193,00          | 62,645      |
| 양식어업재해보험<br>(해양수산부)        |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순보험료 50%<br>지원(국비)<br>지방비(2~3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25,250               | 24,110      |
|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<br>(해양수산부) |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선원 순보험료<br>47~80%지원(국비<br>, 어선종량별<br>지원을 상이)<br>10~20%(지방비) | 1,298,080~<br>1,830,080 | 166,077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선 순보험료<br>42% 지원(국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,012,260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
주: 사업개요는 [참고자료]에서 확인

자료: 각 부처 예산사업설명자료

□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,851억 4,600만원, 2030년 5,251억 3,7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조 5,247억 1,7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| 2026    | 2027    | 2028    | 2029    | 2030    | 합계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추계대상수(A, 명)    | 550.000 | 550.000 | 550.000 | 550.000 | 550.000 | 2,750,000 |
| 지원단가(B, 백만원)   | 1.26    | 1.29    | 1.31    | 1.34    | 1.36    | —         |
| 국비(C=A×B×50%)  | 346,533 | 353,463 | 360,532 | 367,743 | 375,098 | 1,803,369 |
| 지방비(D=A×B×20%) | 138,613 | 141,385 | 144,213 | 147,097 | 150,039 | 721,348   |
| 합계(C+D)        | 485,146 | 494,848 | 504,745 | 514,840 | 525,137 | 2,524,717 |

주: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보험 지원비용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종사자별 보험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이 확정될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보험 지원비용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종사자별 보험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이 확정될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문지은 | 배아형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 문지은 | 02-6788-4645 | mtsophia@assembly.go.kr |

## [참고자료 1] 풍수해보험 사업개요

행정안전부 예산사업설명자료

### □ 개 요

- (추진목적)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(지진 포함)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·관리제도 정착
  - '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, 풍수해보험 시범사업, '08년 전국사업 확대
- (근거법령) 풍수해보험법 제3조
- (대상재해)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- (보험목적물)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, 상가·공장(소상공인)

| 구 분   | 세 부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 택   |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    |
| 온 실   | 농식품부가 고시한 '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' 및 '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' 중 농·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     |
| 상가·공장 |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, 시설 및 집기비품, 기계, 재고자산 등 |

- (보험료지원) 총 보험료의 70~100%
  - ※ 일반 70%~, 차상위계층 78%~, 기초생활수급자 등 87%~, 온실·소상공인 70%~,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(기초, 차상위, 한부모가족) 100%
- (사업관장/운영) 행정안전부/ 7개 보험사업자
  - ※ DB손보, 현대해상화재, 삼성화재, KB손보, NH손보, 한화손보, 메리츠화재

### □ 연도별 가입률

'23.7.31. 기준

| 구분     | '20년    |       | '21년    |       | '22년    |       | '23년 7월* |     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       | 가입      | 가입률   | 가입      | 가입률   | 가입      | 가입률   | 가입       | 가입률   |
| 주택(건)  | 397,822 | 20.6% | 487,308 | 24.9% | 527,331 | 26.7% | 614,254  | 31.4% |
| 온실(ha) | 2,674   | 10.3% | 3,055   | 11.7% | 3,983   | 15.8% | 4,343    | 17.6% |

| 구분      | '20년   |       | '21년   |      | '22년    |       | '23년 7월* |    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        | 가입     | 가입률   | 가입     | 가입률  | 가입      | 가입률   | 가입       | 가입률   |
| 소상공인(건) | 13,917 | 0.96% | 28,655 | 4.6% | 195,792 | 31.9% | 259,984  | 42.3% |

[2023년 풍수해보험료(연간) 및 보험금 예시]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| 보 험 료(전국 평균)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보험금(최대)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 택<br>(정액형)             | 일 반<br>(소유자) | 총 액    | 43,900   | (100.0%)    | 72,000,000* | ▶ 가입면적 80㎡<br>▶ 기준 보험가입금액의<br>90% 보상형(소유자) 및<br>150% 보상형(세입자)<br>▶ 기준 보험가입금액<br>－ 소유자 7,200만원<br>－ 세입자 1,200만원<br>▶ 피해유형별 보험금<br>지급기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국 비    | 24,900   | (56.5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지 방 비  | 5,900    | (13.5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자 부 담  | 13,100   | (30.0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 반<br>(세입자) | 총 액    | 19,800   | (100.0%)    | 12,000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국 비    | 11,200   | (56.5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지 방 비  | 2,700    | (13.5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자 부 담  | 5,900    | (30.0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상위<br>(소유자) | 총 액    | 43,900   | (100.0%)    | 72,000,000*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국 비    | 27,000   | (61.6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지 방 비  | 7,400    | (16.8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자 부 담  | 9,300    | (21.2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상위<br>(세입자) | 총 액    | 19,800   | (100.0%)    | 12,000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국 비    | 12,200   | (61.6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지 방 비  | 3,300    | (16.8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자 부 담  | 4,200    | (21.2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급자 및<br>재해취약지역<br>(소유자) | 총 액          | 43,900 | (100.0%) | 72,000,000*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 비          | 29,600 | (67.36%)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 방 비        | 8,600  | (19.68%)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 부 담        | 5,700  | (12.96%)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급자 및<br>재해취약지역<br>(세입자) | 총 액          | 19,800 | (67.36%) | 12,000,000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비지원         | 13,300 | (19.68%)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비지원        | 3,900  | (12.96%)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 부 담        | 2,600  | (13.0%)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 택<br>(실손비례형)           | 일 반<br>(소유자) | 총 액    | 42,200   | (100.0%)    | 80,000,000  | ▶ 보험가입금액<br>8천만원<br>* 유리창파손 피해 보<br>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국 비    | 23,800   | (56.5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지 방 비  | 5,700    | (13.5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자 부 담  | 12,700   | (30.0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온 실<br>(정액형)             | 일 반<br>(소유자) | 총 액    | 273,000  | (100.0%)    | 8,680,000   | ▶ 철재파이프(A형) 하<br>우스<br>(1,000㎡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국 비    | 154,245  | (56.5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지 방 비  | 36,855   | (13.5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자 부 담  | 81,900   | (30.0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상공인<br>(실손형)            | 상 가<br>(소유자) | 총 액    | 129,200  | (100.0%)    | 100,000,000 | ▶ 상가건물 1억원<br>▶ 재고자산 5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국 비    | 73,000   | (56.5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지 방 비  | 17,400   | (13.5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자 부 담  | 38,800   | (30.0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 가<br>(세입자) | 총 액    | 71,200   | (100.0%)    | 50,000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국 비    | 40,200   | (56.5%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| 보 험 료(전국 평균)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보험금(최대)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 | 지 방 비 | 9,600   | (13.5%)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| 자 부 담 | 21,400  | (30.0%)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공 장<br>(소유자) | 총 액   | 162,900 | (100.0%) | 150,000,000 | ▶ 공장건물 1.5억원<br>▶ 재고자산 5천만원 |
|     |              | 국 비   | 92,000  | (56.5%)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| 지 방 비 | 22,000  | (13.5%)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| 자 부 담 | 48,900  | (30.0%)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공 장<br>(세입자) | 총 액   | 56,700  | (100.0%) | 50,000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| 국 비   | 32,000  | (56.5%)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| 지 방 비 | 7,700   | (13.5%)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| 자 부 담 | 17,100  | (30.0%)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보험가입 금액, 면적, 지역 및 지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

## [참고자료 2] 농업인안전재해보험

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설명자료

### □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

- 추진배경 :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피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
- 사업목적: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

### □ 법적 근거

-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등의 재정지원) 제1항

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
### □ 실적

-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(예산액기준,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)  
- (농업인안전보험) '23년 953천명, (농기계종합보험) '23년 153천대 가입  
(단위: 백만원)

| 연도       | 2021   | 2022   | 2023   | 2024   | 2025(안)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사업비(백만원) | 87,035 | 89,864 | 97,231 | 95,598 | 99,348  |

### [참고자료 3] 양식어업재해보험 개요

해양수산부 예산사업설명자료

- (현황) 재해피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입('08), 거대재해의 경우 국가재보험을 통해 국가에서 위험 분담

- 근거법령 :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
- 보험사업자 : 수협중앙회
- 대상품목(28개)
  - 본사업 : 넙치, 전복, 해삼가두리어류 등 17개 품목
  - 시범사업 : 김, 미역, 멍게 등 11개 품목
- 보상재해
  - (주계약) 태풍(강풍), 해일, 풍랑, 호우, 홍수, 대설, 적조, 한파, 이상조류, 저수온 등
  - (특약) 전기장치위험, 이상조류·고수온·저수온·수질, 조수, 양식시설물
- 보장수준
  - 수산물 : 산지가격의 85~90% 수준으로 보상(보험가입금액 이내)
  - 시설물 : 원상복구비 전액(보험가입금액 이내)

- (지원) 보험가입 유도 및 어업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(국비 50%, 지방비 20~30%) 및 운영비 전부(100%)를 지원

- \* 예산 : ('20) 268억원 → ('21) 283억원 → ('22) 253억원 → ('23) 230억원

- (가입) 정부가 지원하되,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(物的)보험이고, 가입여부는 양식어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임의보험

- \* 사람의 생명·신체 등을 보호하는 人的보험은 가입의무 부여(ex 산재보험, 어선원보험)

- \*\* 가입자 수(가입률) : ('20) 3,744어가(39.1%) → ('21) 2,682(28.0) → ('22) 2,733(37.0) → ('23) 2,936(39.8)

- (추진절차) 보험사업자(수협중앙회)를 통해 상품개발, 가입 및 보험금 지급 등 일련의 절차 수행, 우리부에서 관리·감독 및 국고 보조



## [참고자료 4]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요

해양수산부 예산사업설명자료

- 법령 및 도입년도 : 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” / 2004년
- 사업목적 :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고 재해 어선의 복구를 촉진하여 어업인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 도모
- 국고지원 : ('24) 1,661억원(어선원 480억, 어선 501, 사업비 416, 의료재활 5, 미지원액 지원 259억)
- 사업자 : 수협중앙회

### <어선원보험>

#### □ (가입대상)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

- 당연가입 : 3톤 이상 어선
  - \* 임의가입 : 3톤 미만 어선, 가족어선원 승선 어선, 내수면어선, 양식어장 관리선, 시험·연구·조사·지도·단속선 등

#### □ (재해보상) 어선원이 조업 중 부상,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어선원재해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 이행

- \* 보험급여 : 요양·상병·장해·일시보상·유족·장례비·행방불명·소지품 유실급여

#### □ (국고보조) 톤급별로 순보험료 0~70%, 부가보험료 75% 보조

- \* 순보험료 : 10톤 미만 70%, 10~30톤 미만 60%, 30~50톤 미만 30%, 50~100톤 미만 20%

### <어선보험>

#### □ (가입대상)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

- \* 사유재산인 어선을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든 톤급 어선을 임의가입 대상으로 함

□ (재해보상) 어선의 침몰, 좌초, 충돌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 보상

○ 담보범위 : 전손 및 분손 보험금, 충돌손해배상, 임의구조비 등

○ 특약담보 : 자기부담금보상특약, 기관내적단독사고보상특약 등

□ (국고보조) 톤급별로 순보험료 0~70%, 부가보험료 75% 보조

○ \* 순보험료 보조 : 10톤 미만 70%, 10~20톤 미만 60%

□ 어선원보험

(단위 : 명, %, 신계약 기준)

| 톤급별     | 2021년   |        |       | 2022년   |        |       | 2023년   |        |  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        | 대상      | 가입     | 가입률   | 대상      | 가입     | 가입률   | 대상      | 가입     | 가입률   |
| 계       | 105,279 | 54,149 | 51.4  | 105,279 | 54,649 | 51.9  | 103,148 | 55,263 | 53.6  |
| 3톤 미만   | 42,616  | 4,443  | 10.4  | 42,616  | 4,715  | 11.1  | 40,641  | 5,039  | 12.4  |
| 1톤 미만   | 10,130  | 158    | 1.6   | 10,130  | 168    | 1.7   | 8,320   | 185    | 2.2   |
| 2톤 미만   | 20,843  | 1,672  | 8.0   | 20,843  | 1,780  | 8.5   | 20,640  | 1,855  | 9.0   |
| 3톤 미만   | 11,643  | 2,613  | 22.4  | 11,643  | 2,767  | 23.8  | 11,681  | 2,999  | 25.7  |
| 3톤 이상   | 62,663  | 49,706 | 79.3  | 62,663  | 49,934 | 79.7  | 62,507  | 50,224 | 80.3  |
| 4톤 미만   | 7,382   | 3,676  | 49.8  | 7,382   | 3,969  | 53.8  | 7,532   | 4,012  | 53.3  |
| 5톤 미만   | 9,865   | 5,385  | 54.6  | 9,865   | 5,559  | 56.4  | 9,453   | 5,649  | 59.8  |
| 10톤미만   | 21,878  | 15,761 | 72.0  | 21,878  | 16,393 | 74.9  | 21,307  | 16,644 | 78.1  |
| 20톤 미만  | 2,673   | 1,944  | 72.7  | 2,673   | 1,921  | 71.9  | 2,558   | 1,883  | 73.6  |
| 30톤 미만  | 7,210   | 8,692  | 120.6 | 7,210   | 8,226  | 114.1 | 7,651   | 8,335  | 108.9 |
| 50톤 미만  | 4,362   | 5,158  | 118.2 | 4,362   | 5,094  | 116.8 | 4,969   | 5,128  | 103.2 |
| 100톤 미만 | 6,164   | 6,140  | 99.6  | 6,164   | 5,974  | 96.9  | 6,030   | 5,838  | 96.8  |
| 100톤 이상 | 3,129   | 2,950  | 94.3  | 3,129   | 2,798  | 89.4  | 3,007   | 2,735  | 91.0  |

\* '23년 외국인 선원(총16,083명) 톤급별 가입비율 : 3톤미만 2%(309명), 3톤이상 98%(15,774명)

## □ 어선보험

(단위 : 척, %, 신계약 기준)

| 톤급별      | 2021년    |          |        | 2022년    |          |        | 2023년  |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
|          | 대상       | 가입       | 가입률    | 대상       | 가입       | 가입률    | 대상     | 가입     | 가입률  |
| 계        | 60,873   | 21,094   | 34.7   | 60,873   | 22,240   | 36.5   | 58,139 | 23,037 | 39.6 |
| (10톤 미만) | (57,255) | (18,193) | (31.8) | (57,255) | (19,317) | (33.7) | 54,504 | 20,215 | 37.1 |
| 5톤 미만    | 48,021   | 12,132   | 25.3   | 48,021   | 13,023   | 27.1   | 45,329 | 13,822 | 30.5 |
| 10톤 미만   | 9,234    | 6,061    | 65.6   | 9,234    | 6,294    | 68.2   | 9,175  | 6,393  | 69.7 |
| 20톤 미만   | 1,070    | 656      | 61.3   | 1,070    | 1,070    | 66.6   | 1,147  | 745    | 65.0 |
| 20톤 이상   | 2,548    | 2,245    | 88.1   | 2,548    | 2,548    | 86.7   | 2,488  | 2,077  | 83.5 |